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19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의안 번호	관련 671
----------	-----------

1. 수정이유

-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한강수계관리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함.
-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타 다른 조례의 경우도 의원 추천의 주체를 ‘의회’가 아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성 측면에서 현행을 유지함.
- 안 제5조4항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치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토록 하고 있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 경우는 위원회 해산 시기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함. (안 제4조)
- 나. 안 제5조제3항제1호를 현행대로 유지함. (안 제5조제3항제1호)
- 다. 안 제5조4항 중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함.
(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를 “의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5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 6.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 6. (현행과 같음) <p>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전이</p>	<p>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p>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전이</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p>	<p><u>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u></p> <p>⑤ ----- ----- -----</p> <p>-- <u>말는다.</u></p>	<p><u>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u></p> <p>⑤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의 항번호를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제5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의”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시장이 따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물순환안전국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p>제9조(공개) ① (생략)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 3. (생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p> <p>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p>	<p>제3조(위원회의 설치) ----- ----- ----- ----- ----- 둘 수 있다.</p> <p>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p> <p>⑤ ----- 맡는다.</p> <p><u><삭제></u></p> <p>제8조(위원회의 운영) <u><삭제></u></p> <p>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공개) ① (현행과 같음) 1. <u>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u> ----- 2. <u>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u>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 ② ----- 시장이 따로 -----.</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u>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u></p> <p><u>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u></p> <p><u>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u></p>	